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고 50명(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지난해 2023년 9월 7일 50명(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명(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다.

1.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3 적용범위

-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 ▶ 의무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법인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질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1.4 적용시기

- ▶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의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되었다.
 ⇒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 제5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벌칙규정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게 된다.
-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구분	적용대상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1.7 양벌규정

-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대상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 외)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 외)

1.8 손해배상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

- ▶ **경영자의 리더십**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 ▶ **근로자의 참여**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위험요인 파악** :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비상조치계획수립** :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 ▶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자 리더십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경영방침 수립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여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여부						
	경영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여부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	기업 전체, 부서,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활동 등 과정지표 포함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여부						
	안전보건방침과 연관성 유지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 사유 발생 시 수정여부						
안전보건 자원배정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제안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여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업무분장 실시 여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 방안 검토 여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을 위한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 여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준대책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평가 기준 및 관리 여부						

2.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제2호)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담조직 설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역)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2.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위험요인 정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마련 여부						
	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여부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여부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지 여부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위험요인 정보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지 여부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여부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여부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여부						
유해인자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여부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여부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여부						
위험장소 및 작업 장소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여부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여부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여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위험성 평가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여부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여부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여부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위험요인 제거·대 체 및 통제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여부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통제 방안을 마련 여부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필요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						
종합대책 수립·이 행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여부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여부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의 명시 여부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 방안 마련 여부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 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 마련 여부						
교육훈련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사업주 교육등) 여부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성과평가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체계 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반기1회 이상)으로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여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 여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업무절차(특별점검)가 수립되어 있고,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자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2.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근로자 참여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정보공개	경영방침,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여부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여부						
참여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여부						
	도급인·수급인 협의체 등 운영 절차 여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도입 운영 여부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근로자 참여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참여문화 조성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직업자 참여 여부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2.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비상조치계획 수립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재해발생 장소에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후 작업재개 가능 여부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 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재해 발생 시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여부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적절히 포함하였는지 여부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되도록 수립하였는지 여부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여부						

2.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자율점검표〉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사업장 선정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선정 여부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등에 대한 검토기준 마련 여부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등에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 여부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여부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 및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일시	년 월 일 : ~ : (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 상 인 원				【교육 참석자 명단】 참조
	참 석 인 원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중대산업재해편)				
교육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교육장소 및 실시자	교육장소	직 명		성 명	

〈 교육 참석자 명단 〉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